

근무시간 중 물품홍보행위 조사 결과

□ 조사개요

- 조사사항명 : 근무시간 중 물품홍보행위 조사
- 조사배경 :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구원 직원의 근무시간 중 물품홍보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
- 조사 대상 : ○○○○실 △△△
- 조사 중점 : 이메일 발송 등 단순홍보 외 적극적 홍보, 강요 등 여부 해당 행위로 인한 이득을 얻고자하는 의도 및 실제 이득 여부 해당 행위의 복무규정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
- 조사기간 : 2025.2.26.~3.21. (기간 중 5일)
- 조사인원 : 윤리감사실 감사담당 1명

□ 조사결과

○ 지적사항 총괄

(단위 : 건, 천원, 명)

합계			변상 (금액)	징계 (인원)	시정(금액)			주의· 경고 (인원)	개선 요구	권고	통보	고발 (인원)	모범 사례 (인원)
총 건수	신분상 조치 (인원)	재정상 조치 (금액)			소계	추징· 회수	기타						
1	1 (1)	-	-	-	-	-	1 (1)	-	-	-	-	-	-

○ 세부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

연번	지적사항	주요 내용	처분종류	관련부서
1	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사결과 설 명절 시즌에 국한된 일회성 행위로 금전적 이득 취한 정황이 없음. 해당 홍보 행위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돕고, 직원에게 할인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. 	훈계	○○○○실

연번	지적사항	주 요 내 용	처분종류	관련부서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만, 근무시간 중 지인의 영리활동을 돕는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소지가 있으며, 연구원 내 외부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메일을 발송한 점 등은 직원으로서 품위를 다소 손상케 한 측면이 있음. 		